

## On-Line 중재 상담실



### 망자의 죽음에 관한 언론의 과도한 보도

얼마 전 친척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방에서 독극물이 나왔고, 경찰에서는 자살로 추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주의 의견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하지 않았습니 다. 즉 정확한 사인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도 그냥 자살추정으로 결론난 상황입니 다. 그러나 신문과 라디오의 보도 내용은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 했다'로 나왔습니다. 더욱이 보도 내용 에는 사는 동네와 이름(김모 씨 처럼)까지 정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은 어떻게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보도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사에서 동네 이름과 고인 의 성까지 보도하여 사생활까지 침해하였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보도입니까? 보도에 대한 정정 기사 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기사 가 나갔다는 것이, 사생활을 침해 했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유족들은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우리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중재절차를 통해 정정 보도나 반론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정기간 행물을 자체 심의하여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권리를 침해한 기사 등에 대하여 시정권고 하는 기관입니 다.

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고인의 신원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공개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 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사내용이 공공의 관심사로서 우월한 공 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사는 면책 될 수도 있습니다.



###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

언론보도 시 제보자의 의견만 듣고 기사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사는 사실에 입각하여 제보 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게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공정한 보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허위 제보인 경우 제보자 공 개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 야 합니까?



우리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중재절차를 통해 정정 보도나 반론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정기간 행물을 심의하여 시정권고 하는 기관입니다.

제보자의 의견을 듣고 쓴 기사가 사실과 다르 거나 편파적일 경우 우리 위원회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에 허위 제보를 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 을 물을 수 있겠으나 언론사로서는 취재원을 보호 해야 하는 의무도 있으므로 취재원 공개의무를 일 료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재판부에서 취재 원을 보호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과 공정한 재판실 현이라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취재원 비닉권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편파보도로 명예훼손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편파보도로 명예가 훼손 되었습니다.

○ ○일보 신문에 게재된 편파기사로 인해서 피 해를 본 것인데요. 물론 그분은 실명까지 거론되 었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보도되

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고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이 상대방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분께서 중재신청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기사는 명백하게 거짓으로 작성되었고 기자는 이쪽에 사실확인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A**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일보 지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었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보도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Q** **취재 기자의 무단 침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재를 위하여 가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새벽에 주택 월당) 집주인의 동의 의사도 없이 원하지 않는 보도사항을 무단 취재(촬영)한 후 이를 보도하여 집주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이것 또한 중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경찰에 무단 가택침입죄로 고소 준비 중인 상황이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 또는 처벌이 가능한 사항인지요?

**A** 우리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중재절차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중재대상은 보도로 인한 피해에 한하며, 취재과정에서 발생한 가택 무단침입행위 등에 대한 중재나 처벌은 중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Q** **인터넷언론보도에 대해**

질의1. 인터넷언론(방송, 신문)보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질의2. 작년에 허위사실을 보도한 내용이 인터넷방송사이트에 아직도 게재되어 있습니다(초기화면에는 없지만 뉴스검색으로 재시청할 수 있음). 이런 경우도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첫째, 현재 중재신청이 가능한 매체는 '정기간행물의등 록에관한법률', '방송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거,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방송·뉴스통신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언론을 상대로 한 중재신청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둘째, 작년의 방송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남아 있는 경우 이 또한 인터넷 언론의 일종으로서 역시 중재대상매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5년 7월 28일부터는 새로이 제정된 '언론중재 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인터넷 매체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Q** **실명표기된 기사로 인한 피해 사례**

인터넷에 본인의 이름을 검색하면 기사가 나옵니다. 몇 년 전 사건입니다. 벤처기업을 했습니다. 재판의 판결은 유상증자에 관한 절차법 위반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기사는 처음 체포되던 날 체포 전에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 왔더군요. 또 기사의 제목이 사이버 벤처기업 대표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사 본문에는 본인의 이름 실명과 나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사실과 다르고 현재 법적 책임을 다하였는데 기사검색에서 실명검색을 하면 나타나서 당시의 아픈 기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A** 우리 위원회는 보도내용이 잘못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중재절차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인터넷 매체에 의한 피해는 언론중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회에 중재신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기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피해 사항에 대해 반박문 게재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전화 02-3415-0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